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3.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47호로 2015년 2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2013년 이후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된 후 폐기물처리비가 급상승하여
이에 대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수료 현실화가 절실한 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낮은 주민부담률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인상,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한 종량제 수수료 및 원천적 감량 기반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수료 금액 인상(제9조제2항 관련 안 별표 2)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

나. 규격봉투 가격 적용시기 규정(안 부칙)

-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2015년” 기준은
2015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적용함.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타구제정 : 금천구

(입법예고 등 진행 중 : 종로구, 강동구, 구로구, 양천구, 송파구)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비용은 해마다 상승하고 자치구별로 상이한 봉투 가격을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맞춰 단일 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9조제2항 관련 별표2의 인상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기준과 부칙에는 적용시기를 단계별로 규정함.

○ 읍폐수 해양투기 금지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의 급격한 상승과 종량제 수수료가 기준원가에 현저히 미달하여

이로 인하여 구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자치구별로 상이한 현행
규격 봉투 가격을 1ℓ기준 현재 60원을 2015년 70원, 2017년 100원으로
2단계에 거쳐 인상하려는 안이며,

조례에 선반영하여 시기 도래시 자동 인상토록 하여 2017년도까지
25개 자치구의 종량제 수수료를 단일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1)주민부담률이 현재 49.2%에서 2017년까지 73%로 예상됨.

-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위주의 정책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이 낮은 주민부담률과 배출자 부담 원칙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 주민 부담률을 높여 감량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인상안으로 급격한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부담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추진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됨.

- 시행에 앞서 폐기물 감량 및 수수료 인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1) 주민부담률 : 2015년 현재 49.2%, 2015년 인상 후 59.3%, 2017년 73%

관 련 근 거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⑤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